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베트남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변경시행일: 2020.10.05

3. 주요 정정사항 :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

[신탁계약서]: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

정정 전	정정 후
제25조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	제25조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
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<u>영업일</u>	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<u>영업일</u>
<u>의 다음 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	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
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	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
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	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
을 준용한다)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	을 준용한다)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
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[다만, 토요일은	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[다만, 토요일은
제외한다]로 한다. <단서 생략>	제외한다]로 한다. <단서 현행과 같음>
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	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
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	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
영업일부터 <u>제3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	영업일부터 <u>제4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
준가격으로 한다.	준가격으로 한다.
<u><신 설></u>	<u>부 칙</u>
	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[(간이)투자설명서] :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	
요약정보				
매입 방법	기준가격 적용일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	
	변경	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</u> 에 공	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</u> 에	
		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
		-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	-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	
		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</u> 에 공	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4영업일</u> 에	
		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
			※ 2020년 10월 5일 시행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2. 집합투자기구의	연혁 추가	-	- 2020.10.05	
연혁			: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	
			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	
11. 매입, 환매,	기준가격 적용일	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	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	
전환 기준	변경	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	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	
가. 매입		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</u>	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	

		<u>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	업일(D+2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
		가격 적용	가격 적용
		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	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
		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</u>	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4</u>
		<u>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	<u>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
		준가격 적용	준가격 적용
12. 기준가격 산정	자본시장법시행령	- 외화표시상장주식/상장채무증권	- 외화표시상장주식/상장채무증권
기준 및 집합투자재	개정사항 반영	: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	: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
산의 평가		하는 유가증권시장의 <u>최종시가</u> 또는 2	하는 유가증권시장의 <u>전날의 최종시가</u>
나. 집합투자재산의		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	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
평가방법		보를 기초로 한 가격	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
		- 외국집합투자증권	- 외국집합투자증권
		: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	: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
		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. 다만, 외국	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. 다만, 외
		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	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
		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	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
		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	되는 <u>외국 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</u>
		- 장내파생상품	- 장내파생상품
		: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	: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
		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<u>가격</u>	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<u>가격(해외 파생</u>
			<u>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u>

<끝>.